

의안 번호	2235	【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4. 2. 29.(목)
- 제출 자 : 김태욱 의원 외 9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9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3. 15.(금)

2. 제안이유

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공공조형물 관리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등(안 제7조)
-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(안 제8조)
- 주민참여 등(안 제10조)
-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12조)
-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관련(안 제18조 ~ 제20조)
-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(안 제21조 ~ 제22조)
- 전담부서의 설치 등(안 제23조)

4. 근거법규

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6조

5. 검토의견

-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위한 통합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리를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임.
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자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6. 15.>

제6조(지역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광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계획”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1.>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변경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, 2023. 8. 8.>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,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⑥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
[제목개정 2023. 3. 21.]